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012

제출연월일 : 2024. 8. 20.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 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 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 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제1호나목의 사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 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 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0조의4"로,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 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3항 중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을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을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로, "제99조"를 "제9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의2제1항"을 "제3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 1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1의3.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1의4. 제2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0조의4의 개정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0조의4"로 개정하는 부분, 제39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2. 부칙 제2조: 2027년 2월 7일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 97조 및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
	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u>지정하여야 한다.</u>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u>각 목의 사항</u>
	<u>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u>
	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
	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
	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u>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u>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
	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
 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 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 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 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 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 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 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 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제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가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1
<u>제20조의3, 제20조의4</u>
제32조의4제2
<u> </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

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 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 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 의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 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 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 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

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 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 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 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 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 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 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 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 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 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 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신 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준용)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 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 임된 시 ·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 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
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생략)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3)				
	시정	조치디	병령의	집행
<u>정지,</u> 문서	의 성	<u> 달</u> -		
		- ズ	98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⑤ (생 략)
- 제45조(과태료) ① <u>제32조의2제1</u> 기 한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2. ~ 6.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u>제32조의4제1</u>
<u>항</u>
<u>.</u>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
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의3.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
여 지정 사항을 공개하지 아
 니한 자
 1의4. 제20조의4제6항을 위반하
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르지 아니한 자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